

창업교육운영규칙

(2014. 4. 11.)

1차개정 2015. 11. 20.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창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창업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창업교육: 창업활동을 위한 준비, 실행,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2. 창업휴학: 창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것을 지칭한다.
3. 창업학점: 창업준비, 창업실습 등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취득하는 학점을 통칭한다.
4. 창업강좌 학점교류: 본 대학과 타 대학의 학점교류협약을 통해 재학생 간의 상호 창업관련 교과목의 수강 및 각종 창업활동 참여 등을 통칭한다.

제 3 조(창업기준일) 창업기준일은 다음에 따른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
2.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 등기일

제 4 조(창업종목의 제한) 학생창업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위해 창업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창업교육 및 창업휴학 인정 업종) 학생의 전공 및 학업수행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의 전공과 연계되는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창업휴학 신청 및 자격

제 6 조(휴학신청) ①창업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
2. (삭제 2015.11.20.)
3. 신청자격 증빙자료 1부
4.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②해외창업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신청자격) 창업휴학의 신청자격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교과목 수강: 창업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2. 창업관련 동아리활동: 1년(2개 학기) 이상 창업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자
3. 교육참가: 공인된 기관에서 9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4. 창업관련 대회 입상자: 공인된 국내외 창업관련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창업한 자

6. 기타, 창업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8 조(창업휴학 신청기간)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1학기 휴학신청자: 2학기 종강일까지
2. 2학기 휴학신청자: 1학기 종강일까지

제 9 조(창업휴학 기간) 1개 학기 이상의 단위로 시행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창업휴학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학연한의 산입) 창업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장 창업휴학의 지도·결과보고

제11조(창업휴학자의 지도학생 수) 창업현장을 지도·관리하는 교수 1인당 창업휴학생 수는 학기당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총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창업휴학의 지도) ①지도교수는 창업휴학자의 창업현장을 학기당 2회 이상 방문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②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의 현장지도는 서면,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지도비) ①창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경우에는 현장지도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해외창업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창업현장 지도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해당 학기의 종강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휴학의 취소·징계

제15조(창업휴학 유지의 상실 보고) 창업휴학자가 창업휴학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창업휴학자의 자격상실 기준일) 창업휴학자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사업자 또는 법인 폐쇄일
2. 지도교수의 현장결과보고서에 의한 자격유지 심의 확정일
3. 창업휴학자의 창업휴학 취소신청일
4. 기타 창업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자격상실 확정일

제17조(창업휴학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휴학을 취소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으로 창업유지를 상실한 경우
2.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결과보고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3. 민형사상이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적격 판정을 받거나, 협력한 경우
5. 기타 창업휴학 유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창업휴학 자격상실자의 복학) 창업휴학 유지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복학하여야 한다.

1. 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상실한 자: 해당 학기 복학

2. 학기 개시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후에 상실한 자: 다음 학기 복학

제19조(창업휴학 자격상실자의 미보고 등의 징계) 창업휴학 유지 자격을 상실한 자가 그 사실에 대해 보고기한의 미준수, 미보고, 허위 보고, 기타 부적절한 은닉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1. 정학: 최대 2개 학기 이하의 정학 조치한다.
2. 장학: 최대 2개 학기 이하의 장학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징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기타 등으로 조치한다.

제5장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제20조(창업교육운영위원회 구성) ①공정하고 객관적인 창업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총장이 임명하는 학사부총장(위원장), 교무처장(부위원장), 창업관련 부서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창업교육의 강화를 위해 창업 관련 외부 단체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2. 창업교육, 창업과목, 창업휴학, 창업강좌, 창업교류 및 학점인정 등의 승인
3. 창업교육 관련 제도의 개발과 승인
4. 창업관련 업종의 제한 및 승인
5. 기타 창업관련 교육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2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에 의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따른다.

제2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 반영, 또는 실비 등의 사례를 할 수도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24조(창업교육운영소위원회) ①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진작과 간소화를 위해 창업교육운영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학사부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소위원회의 임기, 운영 등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장 창업학점·수강·창업동아리

제25조(창업학점) ①창업활동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창업참가자에게 창업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창업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창업실습: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교양 교과목으로 '창업실습1'(2학점), '창업실습2'(2학점)로 구분한다.
2. 창업현장실습: 창업활동의 수행을 위한 전공 교과목으로 '창업현장실습1'(4학점), '창업현장실습2'(4학점), '창업현장실습3'(4학점), '창업현장실습4'(4학점)로 구분한다.
- ③'창업실습'은 일반학기 또는 계절학기로 수강할 수 있고, '창업현장실습'은 일반학기 수강만 가능하다.
- ④'창업실습' 교과목은 일반과목 또는 창업동아리 활동의 인정 등으로 구분한다.

제26조(창업과목의 수강제한)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창업휴학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27조(창업학점 등록) ①'창업현장실습' 또는 계절학기 '창업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창업현장실습', 또는 계절학기 '창업실습' 교과목의 수강료 등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창업과목의 설강 조건) ①'창업실습' 일반 교과목은 10명 이상의 수강신청으로 개설하되, 7명 이상의 수강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창업동아리 활동의 '창업실습' 교과목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타교생의 수강 인원은 가산하지 않는다.

④'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창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29조(창업과목의 중복수강 금지) ①1개 학기에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등의 중복수강은 불허한다.

②본 대학의 '창업실습' 또는 '창업현장실습' 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타교 교과목의 동일 학기 이수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창업과목의 성적평가) ①창업과목의 성적은 'P'(pass)와 'F'(fail)로 평가한다.

②창업과목의 성적평가는 지도교수가 담당하며, 해당 학생의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양학점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창업과목의 시수인정) ①창업동아리 활동의 '창업실습' 학점인정 시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창업현장실습'(4학점) 교과목의 시수인정은 각 과목당 1/4로 한다.

제32조(타교 수강 창업관련 교과목의 인정) 타교에서 수강한 창업관련 교과목이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 명과 상이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창업학점의 취소) 부당하게 취득한 창업학점은 심의를 거쳐 취소한다.

제34조(창업동아리) ①본 대학이 인준하는 정식 창업동아리로서 2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활동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의 창업동아리활동 지도결과는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제35조(창업동아리 활동의 학점인정) ①본 대학이 인준한 창업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실적을 평가하여 '창업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창업동아리 활동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당해학기 재학생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타교생은 산입하지 않는다.
2. 동아리 활동의 시작과 종료는 해당 학기의 학사력과 동일해야 한다.
3. 지도교수의 학기당 5회 이상의 지도실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 4. 동아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사업계획서, 창업시제품, 실적 등의 결과물)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③타교생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은 협약에 의한다.

제7장 창업강좌 학점의 교류

제36조(창업강좌 학점 교류) ①본 대학 재학생이 타교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교에서 개설한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2. 재학기간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담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4.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타교생의 본 대학 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은 교류협정에 따른다.

제37조(타교 수강 창업학점 인정 및 평가) 본 대학이 인정하는 대학에서 개설한 창업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은 'P'(pass)와 'F'(fail)로 평가한다.

제38조(타교생의 창업 교과목 수강) 타교생이 본 대학이 개설한 창업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제39조(타교생의 수강료 및 수강활동) ①수강료는 교류협정에 따른다.

②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학생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류기간 또는 수강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수강자가 부담한다.

④타교생의 원활한 수강활동을 위해 소속교와 협력하여 지도·관리하며,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한다.

제40조(학생지도) ①본 대학 재학생의 타교 수강, 또는 타교 재학생의 본 대학 수강 시 수강 대학의 지도를 받는다.

②수강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타교 소속 수강생이 본 대학의 지도를 거부할 시, 수강중단을 할 수 있으며 납입한 등록금은 본 대학의 등록금환불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창업 교과목의 공동개설) 본 대학과 협정을 맺은 대학이 공동으로 창업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칙

제42조(개정 및 준용) 이 규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제 규칙 등의 준용 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4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창업교육운영규칙 3-2-2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